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931

발의연월일: 2025. 2. 6.

발 의 자:염태영·김우영·복기왕

박정현 · 정준호 · 이해식

박홍배 • 민병덕 • 박주민

손명수·김남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노인·장애인 등다양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구성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 비주택 거주 가구가 증가하고,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등이 사회 문제로대두되고 있는바, 수요자 맞춤형 주거서비스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주거서비스를 강화한 공공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 확대가 필요함.

그런데 이러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고 있어 범위가 제한적이고 명칭이나 공급대상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과 공급 활성화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1 신설).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11(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관리를 위탁하여 다양한 입주수요에 따른 공간구성과 주거서비스를제공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운영기관, 임대조건, 운영지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의11(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		
	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		
	는 단체에 운영・관리를 위탁		
	하여 다양한 입주수요에 따른		
	공간구성과 주거서비스를 제공		
	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하 이 조에서 "특화형 공공임		
	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공급할		
	<u>수 있다.</u>		
	②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		
	주자격, 운영기관, 임대조건, 운		
	영지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u> 정한다.</u>		